

<p>현실적 學院 教習與件을 고려하여 현행 대형 入試學院에서만 一般 教科目 教習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소규모 學院에서도 在學生의 學習補完을 위한 學院教習을 許容함으로써 學習者의 必要와 實用性을 적절히 수용하고자 一般教科目的 补習courses를 運營하는 學院의 施設 規模를 講義室 99㎡ 이상으로 설정하고, 文理系列中 入試學院 등의 施設規模를 현행 “330㎡에서 990㎡ 이상”에서 “66㎡에서 660㎡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며 경미한 實習이나 講義만 필요로 하는 一部 技術, 藝能, 家庭, 事務系列 學院의 施設規模를 현행 99㎡ 이상에서 66㎡ 이상으로 緩和하고, 各series의 施設規模 上限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p> <p>또한 4大門 안쪽 地域에의 學院 및 課外 教習所의 New設 禁止條項을 削除하고 講義室 等의 地下室 使用禁止 規定을 緩和하며, 同一 建物內 同一 教習courses 學院 및 課外 教習所의 設立制限을 緩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p> <p>首都圈整備計劃法施行令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地域에서의 入試·高試學院의 New·增設을 禁止하는 條項을 積極的인 民願案내 次元에서 New設하고, 同一 教習courses學院 및 課外 教習所의 地域別 教習需要基準 設定에 관한 條項을 削除하며, 學院의 原則에 대한 強制條項을 削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p> <p>또한 學院 및 課外 教習所의 부제교습 회수를 上向 調整하고, 學院設立後 1年內 位置 및 設立者の 變更 禁止, 기설학원의 教習courses 變更制限規定을 削除하며, 課外 教習所의 教習場所 變更制限에 관한 條項을 削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p> <p>아울러 行政處分의 違反 事項別 細部基準, 過怠料賦課節次, 學院名稱 表記方法에 관한 事項과 各種 申告書式 等은 教育規則으로 정하기로 하고 削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p> <p>이상으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p> <p>○委員長 李詰鎬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report가 있겠습니다.</p> <p>○專門委員 金長虎 專門委員 金長虎입니다.</p>	<p>서울特別市學院의設立·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report를 드리겠습니다.</p> <p>(報 告)</p> <p>1. 개정경위</p> <p>본 조례(안)은 1995년 5월 4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6일 소관별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p> <p>2. 개정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조례에 의하면 일반 교과목 학원 수강(교습)은 300평이상의 대형 입시학원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재학생의 학원수강 전면 허용조치”(’92.9.1) 이후, 종전 재수생의 입시준비를 위한 입시학원에서의 교습 수요와는 달리 재학생의 학습보완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교습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입시학원의 수용능력은 크게 부족하여 속셈학원등 소규모 학원에서의 불법적인 일반교과목 교습행위가 일반화되고 고액 수강료 징수, 비교육적 폐해 등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으나 이를 현실적으로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할 수 없는 등 제도적 역기능 현상이 없지 않은바,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새로운 형태의 학원교습 수요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li> <li>○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급변하는 학원 교육 수요여건에 적절히 대처하고자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불합리한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설립·운영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사회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li> </ul> <p>3. 주요골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학생의 일반교과목 학습보완의 새로운 교습수요와 순수 입시준비를 위한 교습 수요의 현실적 학원교습여건을 고려하여, 현행 대형입시학원에서만 일반교과목 교습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소규모 학원에서도 재학생의 학습보완을 위한 학원</li> </ul>
--	---

(第77回－文化教育第1次)

<p>교습(수강)을 허용함으로써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적절히 수용하고자, 「일반 교과목의 보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의 시설규모를 강의실 99㎡ 이상으로 설정 함.(현행 조례 제5조제1항 별표3)</p> <p>○ 문리계열중 입시학원등의 시설규모를 현행 "330㎡~990㎡ 이상"에서 "66㎡~660㎡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며, 경미한 실습이나 강의만을 필요로 하는 일부 기술, 예능, 가정, 사무계열 학원의 시설규모를 현행 99㎡ 이상에서 66㎡ 이상으로 완화하고, 각 계열의 시설규모 상한을 폐지함.(현행 조례 제2조제4항, 별표 1, 제5조제1항 별표3(안), 별표2)</p> <p>○ 4대문 안쪽 지역에의 학원 및 과외교습소의 신설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강의실 등의 지하실 사용금지 규정을 완화하며 동일 건물내 동일교습과정학원 및 과외교습소의 설립 제한을 완화함.(현행 조례 제2조제2항, 제4조제1·2항, 제8조제1호 별표2 및 안 제4조제2항)</p> <p>○ 수도권경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의 입시·고시학원의 신·증설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 제1항)</p> <p>○ 동일교습과정 학원 및 과외교습소의 지역별 교습수요기준 설정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현행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8조제3호)</p> <p>○ 학원의 원칙에 대한 강제조항을 삭제함(현행 조례 제6조, 별표4, 별표5)</p> <p>○ 학원 및 과외교습소의 부제교습회수를 상향 조정함(안 제6조의3, 제9조)</p> <p>○ 학원 설립후, 1년내 위치 및 설립자의 변경 금지, 기설학원의 교습과정 변경제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조례 제7조)</p> <p>○ 과외교습소의 교습장소 변경제한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현행 조례 제10조)</p> <p>○ 행정처분의 위반 사항별 세부기준, 과태료 부과 절차, 학원명칭 표기방법에 관한 사항과 각종 신고 서식등은 교육규</p>	<p>칙으로 정하기로 하고 삭제함(현행 제6조의2, 제6조의3 제1항각호, 제13조제1항 별표7, 제15조 등)</p> <p>4. 근거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li> <li>○ 지방자치법 제15조</li> </ul> <p>5. 검토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조례(안)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안)이 전부 개정으로 국회에 계류중이므로, 현행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근거법령의 조문삽입 등의 이유로 차후에 다시 개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됨.</li> <li>○ 본 조례(안)의 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10월 3일 학원비리사건과 관련하여, 그 동안에 제기되어 왔던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규제사항들을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1994년 11월 14일부터 동년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서울특별시 사회교육협의회 등 총 4,134명 25,935건의 의견을 수렴하였음.</li> <li>○ 또한 본 조례(안)은 1994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어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보류되어 오던중 표결에 부친 결과 1995년 2월 20일 부결시켰으며, 2차로 1995년 4월 20일 상정하여 1995년 4월 24일 부결시켰음.</li> <li>○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3항 및 제4항은 대법원 판례(93누 8276 : 1994.2.8선고)에서 학원설립의 자유를 근거없이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선언되어, 이와 관련된 현행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제1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이와 유사한 현행조례 제8조제3호도 유추해석하여 삭제하려는 것으로 사료됨.</li> <li>○ 안 제2조제5항 별표3에서 문리계열 입시 학원의 규모를 660㎡이상, 검정고시학원의 규모를 495㎡이상, 어학학원의 규모</li> </ul>
--	---

<p>를 165㎡ 이상, 성인고시학원의 규모를 165㎡ 이상, 기타 학원은 66㎡ 이상으로 하고, 일반교과목의 보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의 시설규모는 99㎡ 이상으로 하며, 기술, 예능, 가정, 사무계열의 경우 규모가 큰 것은 99㎡ 이상, 규모가 적은 것은 66㎡ 이상으로 하며 독서실의 규모는 132㎡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업계의 영세화 내지 난립을 예방한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일반교과목의 보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의 시설규모로 한정할 경우 보습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습학원이 학교교육의 보충수업이라는 취지로 설립된 것이라면 보다 영세한 업자의 영업권을 보장하는 점이 감안되어야 하며, 어학학원의 경우 국제경쟁력적인 측면에서 시설규모가 보다 상향조정되어야 하며, 기술, 예능, 가정, 사무계열의 경우 규모에 따라 최저 설립규모를 달리한 것은 모순된다고 사료됨.</p> <p>○ 안 제4조제1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시 및 고시학원의 설립을 도로 원표를 중심으로 한 반지름 5km 이내에서 제한하려는 취지와 일치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4조제2항에서 공부상 연면적 990 ㎡ 이상의 건물로서 동일층이 아닐 경우 990㎡ 당 1개소씩 신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최소한 필요한 부분만큼만 규제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사료되고,</p> <p>○ 안 제6조의3제2항제1호 및 제6호, 안 제9조제1호는 의견수렴결과 부제를 완화 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8조에서 과외 교습소의 시설규모를 33㎡ 이하로 규정한 것은 학원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p> <p>○ 안 제13조는 행정행위의 부담적 처분임을 감안하여 행정처분의 종류, 행정처분의 회수, 행정처분의 시기조정 등에 관</p>	<p>하여 규정하였다고 사료됨.</p> <p>○ 현행조례 제2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의2, 제7조, 제8조제1호, 제10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조례 제6조, 제10조제2항, 제14조 및 제15조는 교육규칙으로 정한 사항으로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p> <p>○ 안 제6조의3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은 각종 서식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며, 안 제2조제2항 및 제4항, 제6조의4,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4항은 자구수정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p> <p>다만, 안 제2조제2항은 영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과 중복되는 것이며, 안 제2조제4항은 별표1 또는 별표2는 실험, 실습, 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기준과 경미한 실험, 실습, 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 설비기준으로 구분하였는바, 구분의 실익이 없으며, 안 제11조제3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여도 무방한 사항이라고 사료됨.</p> <p>○ 또한 부칙 제2항제3호의 경우 보습과정의 운영은 학교 교과목의 보충수업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문리계열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예능, 가정, 사무 등 다른 계열에 보습과정의 운영을 적용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됨.</p> <p>○ 따라서 본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안 제2조제5항의 학원설립의 적정규모, 안 제2조제4항의 실험, 실습, 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기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p> <p>.....</p> <p>이상으로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p> <p>○委員長 李喆鎬~ 그러면 본件에 대해서 먼저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李載震委員, 質問해 주시기 바랍니다.</p>
---	--